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'식탁료'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여비의 종류) 여비는 운임, 현지교통비, 숙박료, 식비, <u>식탁료</u>,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로 구분한다.</p>	<p>제2조 (여비의 종류)</p> <p>..... (삭 제)</p> <p>.....</p>